

(제 3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발신 :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수도,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통보

1.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4~229호(94.7.11)로 도시계획사업(수도,도로)실시계획 인가된 공릉배수지건설공사(17만톤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)고시문 사본 1부 . 끝.

수신처 : 서울특별시장(시설계획과장),노원구청장(도시정비과장,건설관리과장,공원녹지과장)

(제 4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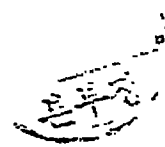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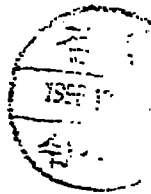
발신 :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관인날인 의뢰

1.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릉배수지건설공사(17만톤)의 도시계획사업(수도,도로)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고시하고자 관인날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) 인가증 1부 . 끝.



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

도시계획사업 1996. 12. 29 제 338 호	담당자	법제심사제장	사무담당관
	<i>(Handwritten signature)</i>	<i>(Handwritten signature)</i>	<i>(Handwritten signature)</i>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 호

도시계획사업(수도, 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4 ~ 229호 (94. 7. 11) 로 도시계획 사업(수도, 도로) 실시계획 인가(공용배수지건설공사 17만톤) 된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(생산관리부:3907-354) 및 노원구(건설관리과 :950-3400)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6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 시행 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2 ~ 24번지 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수도, 도로)
공용배수지건설공사
- 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배수지 용량 - 17만톤
면적 - 59,283㎡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당초 : '94. 7. 11 ~ '96. 12. 31
변경 : '94. 7. 11 ~ '98. 12. 31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: 변경없음
-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변경없음
- 아.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- 자. 변경사유 : 토지보상 지연 및 배수지 발생토 현장 유용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

인 가 증

1. 사 업 명 : 공릉배수지건설공사
2. 사업 시행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 222 ~24번지 일대
3. 사업시행규모 : 배수지용량 - 17만톤, 면적 - 59,283㎡
4. 사업시행기간 : 당초 '94.7.11 ~ '96. 12.31
 변경 '94.7.11 ~ '98. 12.31
5. 사업 시행자 : 서울특별시 (상수도사업본부장)
6. 고 시 번 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6 - 373 호
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: 변경없음

위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사업 (수도,도로)시행 변경 인가함.

아 래



- 가.본 공사 시행시 인근 시민들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것.
- 나.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 절차를 득하도록 할것.
- 다.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제반사항은 수허가자 부담으로 조치한다.

1996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